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9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존치하고,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규정을 존치함(안 제8조 제3항).
- 마일리지 부여기준에서 유형, 대상, 부여점수 및 방법을 조정함(별표).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
3.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

안 제8조제3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.

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] 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온라인 여론조사	설문 문항수 6~10문항 참여	300점	전당 1인 1회
	설문 문항수 11~20문항 참여	400점	
	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	500점	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휴대 전화 문자메 시지 전송서비스</p> <p>3. <u>도서문화상품권 지급</u></p> <p>4. <u>그 밖에 공공서비 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마일리지는 별표 에 따르되,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 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[별표] 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</p>	<p>제8조(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온라인 도서문화 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, 사용방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제></p>	<p>제8조(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온라인 도서문화상 품권으로의 교환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공공서비 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]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</p>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1. 회원 가입	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	500점	최초가입시 1회
2. 로그인	홈페이지 방문자	10점	1일 1회
3. 글·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	글·사진·동영상을 게시한 자 (게시물은 직접 시정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)	100점 이상 300점 이하	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,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 장하여 점수를 부여한다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온라인 여론조사	설문 문항수 6~10 문항 참여	300점	건당 1인 1회
	설문 문항수 11~20 문항 참여	400점	
	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	500점	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말한 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”을 “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”로 한다.

제5조제9호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정 참여유도”를 “시정 참여유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그밖에”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그밖에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

3.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온라인 여론조사	설문 문항수 6~10문항 참여	300점	전당 1인 1회
	설문 문항수 11~20문항 참여	400점	
	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	500점	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"이용자"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</p> <p>4. ·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 말한다.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홈페이지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그밖에</u>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3조(홈페이지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, <u>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----- -----, <u>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-----.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</p>	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----- ----- -----</p>

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

제6조(시장에게 바란다 운영) ①
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“시장에게 바란다”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 ①
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그 밖에-----

제6조(시장에게 바란다 운영) ①

 -----시정 참여유도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 ①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그 밖에-----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·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마일리지 제도의 운영)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대하여 그 이용목적·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(mileage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

3. 도서문화상품권 지급

4.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

② (생략)

[별표] 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그 밖에-----

제8조(마일리지 제도의 운영) ① 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

3.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

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] 마일리지 부여기준 (제8조 관련)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1. 회원가입	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	500점	최초가입시 1회
2. 로그인	홈페이지 방문자	10점	1일 1회
3. 글·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	글·사진·동영상을 게시한 자 (게시물은 직접 지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 하는 것)	100점 이상 3000점 이하	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,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

구 분	대 상	부여 점수	부여 방법
온라인 여론조사	설문 문항수 6~10문항 참여	300점	전당 1인 1회
	설문 문항수 11~20문항 참여	400점	
	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	500점	

주 :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